

의안번호	2203707
의 퇴 인	최민희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4.
추 계 번호	24B3539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11 (전송자격인증) 신설	제2조제14호나목 ¹⁾ 중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(이하 “전송자격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		전송자격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, 제4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11 (전송자격인증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

1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4. "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가.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

나.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

2. 상세 사유

-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함(안 제22조의11 신설)
- 개정안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(이하 “전송자격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도록 하는 것임
 -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(3개)와 문자중계사²⁾(10개)가 공동으로 문자재판매사³⁾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자율운영제도로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,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

[표 1] 전송자격인증제(자율운영제도) 개요

- 이동통신사(3개) :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
- 문자중계사(10개) : 스탠다드네트웍스(주), (주)다우기술, (주)케이피모바일, 켄텍(주), (주)엘지유플러스, (주)케이티, 인포뱅크(주), CJ올리브네트웍스(주), SK브로드밴드, 슈어엠(주)
- (운영형태) 전송자격인증제는 사업자 자율규제로서,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10개가 별도의 운영기관*을 지정하여 인증제 관련 사무를 위임
 - *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9곳에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
- (인증절차)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, 운영기관*에서 신청서의 서류심사, 현장심사를 실시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
 - *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10개, 방통위, KISA,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
- (인증자격) 문자재판매사가 전송자격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은 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②필요한 인적·물적 시설 확보, ③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, 심사 시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 및 스팸 신고량을 확인하여 전송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

- 2) 「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-23호)」 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6. “문자중계사업자”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.
- 3) 「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」 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7. “문자재판매사업자”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.

-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을 운영할 경우, 인증 기준 마련 및 인증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전송자격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,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전송자격인증제(자율운영제도) 설명자료⁴⁾

- 이동통신사(3개) :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
- 문자중계사(10개) : 스탠다드네트웍스(주), (주)다우기술, (주)케이피모바일, 켄텍(주), (주)엘지유플러스, (주)케이티, 인포뱅크(주), CJ올리브네트웍스(주), SK브로드밴드, 슈어엠(주)
- (운영형태) 전송자격인증제는 사업자 자율규제로서,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10개가 별도의 운영기관*을 지정하여 인증제 관련 사무를 위임
 - *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9곳에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
- (인증절차)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, 운영기관*에서 신청서의 서류심사, 현장심사를 실시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
 - *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10개, 방통위, KISA,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

[표 2] 전송자격인증제 세부절차

절차	수행주체	내용
① 인증신청	문자재판사	담당자가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인증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② 서류심사	운영기관	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 기준으로 심사 진행
③ 현장심사		서류심사 결과 승인이 적합한 사업자의 실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설비 확인
④ 인증심의	운영위원회	현장심사 결과 승인이 적합한 사업자의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사업자의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 부여
⑤ 인증서 발급	운영기관	문자전송자격 인증승인 문자재판매사업자 대상 인증서 발급
	문자재판사	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마크 및 인증서 발급 후 게시

- (인증자격) 문자재판매사가 전송자격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은 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②필요한 인적·물적 시설 확보, ③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, 심사 시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 및 스팸 신고량을 확인하여 전송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

4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2] 특수부가통신사업자(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) 현황

□ 2024년 9월말 현재 1,168개 사업자 등록

[표 3] 관리기관별 특수부가통신사업자(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) 현황

관리기관	사업자
강릉전파관리소	(주)제트플레이 등 8개
광주전파관리소	(주)에이디오토 등 50개
대구전파관리소	(주)다해요 등 44개
대전전파관리소	로얄문자 등 29개
부산전파관리소	패스트원 F1 등 102개
서울전파관리소	투투영 등 917개
울산전파관리소	(주)인플러스 등 2개
전주전파관리소	(주)비도스 등 9개
제주전파관리소	이지원 등 3개
청주전파관리소	(주)텍스토리 등 4개
합계	1,168개

자료: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(2024.11.13.검색)